

의안번호	제 657 호
의 결 연 월 일	2014년 월 일 (제 330 회)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4년 6월 2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57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4년 6월 2일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한시기구인 혁신도시관리본부의 존속기한 연장사항 및 그 밖의 정비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<한시기구 연장>

- 혁신도시관리본부
 - 존속기한 : 2014년 6월 30일까지 → 2015년 6월 30일까지(1년)

<다른 조례의 개정> (부칙)

- 규제개혁추진단 신설('14.4.18.)에 따른 「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」 별표(분과위원회 설치 및 소관부서) 개정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충청북도조례 제3496호(2012. 8. 31.)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“2014년 6월 30일”을 “2015년 6월 30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별표 중 일반 행정분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명 칭	소 관 부 서	
	주관실국	부 서
일반행정 분 과	기획관리실 (정책기획관)	의회사무처, 공보관, 감사관, 규제개혁추진단 , 기획관리실, 안전행정국, 청원·청주통합추진지원단, 충북도립대학, 자치연수원, 북부출장소, 남부출장소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부칙(2012. 8. 31 조례 제3496호)</p> <p>제2조(한시기구) 통합추진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4년 9월 30일까지로 하고, 혁신도시관리본부의 존속기한은 <u>2014년 6월 30일까지</u>로 한다.</p>	<p>부칙(2012. 8. 31 조례 제3496호)</p> <p>제2조(한시기구) 통합추진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4년 9월 30일까지로 하고, 혁신도시관리본부의 존속기한은 <u>2015년 6월 30일까지</u>로 한다.</p>

관련법령 발취

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8조(한시기구의 설치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.

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.

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.

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.

제9조(시·도의 기구설치기준) ① 시·도 본청에 두는 실·국·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실·국·본부의 설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·국·본부의 개편,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